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2. 18 선고 2020가단66605(본소), 2021가단60130(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이예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윤정

변 론 종 결 2021. 12. 24.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20. 1. 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 승계인수인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20카정7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의 2019년 증서 제47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피고 D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20년 증서 제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각 2020. 1. 21.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반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20. 1. 8. ‘H’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대여금 42,500,000원에 관하여 위 자동차 공업사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은 같은 날 공증되었다(공증인 I 사무소 2020년 증서 제47호).

나. 한편, 피고 C은 E으로부터 “발행일 2019. 7. 4., 지급기일 2019. 7. 20.,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C, 액면금액 24,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9. 7. 4.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9년 증서 제471호로 공증하였으며, 피고 D은 2020. 1. 6. E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20년 증서 제3호로 “피고 D은 2019. 6. 14.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다, 변제기는 2020. 2. 15. 정하고 변제방법은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이자는 연 24%로 정하고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0. 1. 21. 이 법원 J 및 K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동 2층에 소재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인수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승계인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고,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 승계인수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본소

피고들이 압류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반소

원고가 E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편의상 반소 청구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부

위 기초사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은 원고 및 피고들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동산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동산을 채권자중 1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무자인 E으로서는 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원고는 취소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심리, 판단된 사정을 고려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인수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동산목록

품 명	수 량
스프레이 도장부스	2동
스마트 스크류 콤프레서	3개
콤프레서 탱크	1개
집차대 검사기기	1개
용접기	1개
휠 밸런스 기계	1개
휠 탈착기	1개
메어링 탈착기	1개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	1개
오일교환용 탱크	1개
냉매회수재생 진공주입기	1개
2주식 리프트	2개
4주식 리프트	1개

동산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동 2층

